

2026년도 「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」 참 여 기 업 모 집 공 고

평택시와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『2026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2일

평택시장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▶ 사업목적 :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과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유도
- ▶ 사업기간 : 2026. 4월 ~ 2027. 3월
- ▶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,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소 제조기업
- ▶ 지원내용 : 기업진단 컨설팅(필수) +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(자율)
 - 가. 기업진단 컨설팅(필수과제) : 조직, 인사, 재무, 사업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, 경영전략 및 성장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
 - 나.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(자율과제) : 3개 분야(경영·기술·국제화) 중 택 1하여 기업현장에 맞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안

경영혁신 지원	기술혁신 지원	국제화촉진 지원
<input type="checkbox"/>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- IR, IPO, 경영전략, 브랜드개발, 신 인사제도, HRD 체계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 맞춤형 교육 - 인사혁신, 경영기법도입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- 국내전시박람회, 홍보기반구축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맞춤형 사업화 지원 - 금형, 워킹목업, 산업재산권 출원, 국내규격, 브랜드개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(예) 해외진출전략, FTA대응전략, 원 산지 증명, 관세절감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시장/바이어 신용 조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(예) 해외전시박람회 참가, 바이어 상담, 홍보기반 구축 등

➊ 지원목표 : 5개사 내외

➋ 지원한도 : 총 소요비용의 70% 이내로 기업 당 최대 27,000천원 지원

- 기업진단 컨설팅: 소요비용의 100% 이내, 최대 6,000천원 한도

- 맞춤형 과제: 소요비용의 70% 이내, 최대 21,000천원 한도(기업부담금 30%이상 필수)

※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

☞ 단,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진단 컨설팅을 이미 실시하였거나 자율과제(기업수요 맞춤형 과제)로 기업진단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자율과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27,000천원까지 지원 가능, 이미 기업진단 컨설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자료 제출 필수

2. 신청자격

➊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

가.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
☞ 사업 완료(협약종료)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나. '25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'24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
다.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< 2026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>

업종분류	코드번호 (세세분류)	업종	업종분류	코드번호 (세세분류)	업종
숙박 및 음식점업	55112	여관업	부동산업 및 임대업	68111	주거용건물임대업
	55113	휴양콘도 운영업		68112	비주거용건물임대업
	55119	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		68119	기타부동산업
	55909	그외 기타 숙박업		68121	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	56111	한식 음식점업		68122	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	56112	중식 음식점업		68129	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
	56113	일식 음식점업		68221	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
	56114	서양식 음식점업			
	56120	기관구내식당업			
	56119	기타 외국식 음식점업			
	56131	출장 음식 서비스업			
	56192	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			
	56193	치킨 전문점			
	56194	분식 및 김밥 전문점			
	56132	이동 음식점			
	56199	그외 기타 음식점업			
	56211	일반유희 주점업			
	56212	무도유희 주점업			
	56219	기타 주점업			
	56191	제과점업			
56220	비알콜 음료점업				
오락업 및 문화업	91121	골프장운영업	공공,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	96111	이용업
	91223	노래연습장운영업		96112	두발미용업
	91291	무도장운영업		96113	피부미용업
	91249	기타객블링 및 베텅업		96119	기타미용업
				96121	욕탕업
				96122	마사지업
				96129	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				96912	가정용세탁업
				96913	세탁물공급업
				96921	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
			96922	화장, 묘지분양 및 관리업	
			96991	예식장업	
			96992	접술 및 유사서비스업	
			96993	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	
			96999	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	

3. 지원 제외대상

- 단순히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- 가. 부도기업
 - 나.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
 - 다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- 라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 등)
 - 마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중소기업
-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
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
- 이미 완료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
- **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**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6. 5. 18.(월) 17:00限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(www.egbiz.or.kr) > 로그인 > 신청하기
※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업로드

→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 체크리스트(소정양식) 1부

나. 지원신청서 1부

☞ 신용·정보제공 및 조화·활용 동의서, 참여 확인서, 청렴서약서 포함

다. 사업계획서(산출내역 증빙 포함)

라. 사업자등록증명 1부

마. 공장등록증명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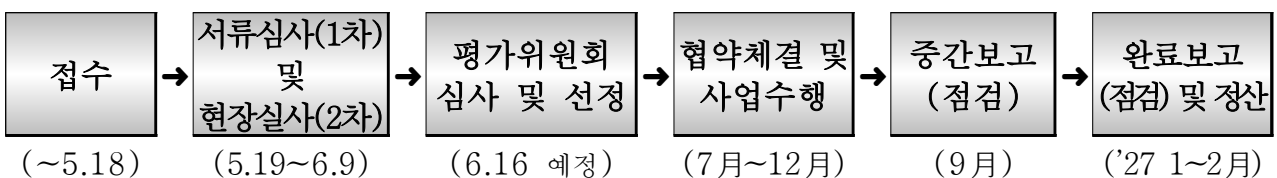
바. 최근 2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(관할세무서장 확인) 1부

사.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12월말 귀속분) 1부

아.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

자. 기타(지식재산권 출원서, 규격인증서, 각종 기업 인증서 사본) 각 1부

5. 선정절차



※ 상기의 일정 등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6. 우대사항

- 최근 5년이내 평택시 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경우 가점 부여(5점)

7. 유의사항

- 수출관련 지원사업을 제외한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(중복 신청은 가능)
- 지원자격, 우대사항 등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임
-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GBSA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 행위 수반시)
 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④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8. 문 의 처

- 문 의 처 :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거점센터 평택출장소
 - (TEL) 031-651-7162, (E-mail) j243454@gsa.or.kr
 - 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, 1층 GBSA